

의안번호	2202568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4.11.5.
추 계 번호	24B26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4,000만원~7억4,000만원, 2030년 6억8,000만원~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32억1,000만원~37억5,000만원(연평균 6억4,000만원~7억5,0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A)		0.08	0.08	0.08	0.08	0.08	0.42	0.08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시나리오1 (20~30% 증가)(B1)	3.7	3.5	3.7	3.8	3.9	18.6	3.7
	시나리오2 (50% 증가)(B2)	4.7	4.6	4.7	4.9	5.1	24.0	4.8
출국금지(C)		2.6	2.5	2.6	2.7	2.8	13.1	2.6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1 (20~30% 증가) (D1=A+B1+C)		6.4	6.1	6.3	6.6	6.8	32.1	6.4
시나리오2 (50% 증가) (D1=A+B2+C)		7.4	7.1	7.4	7.7	8.0	37.5	7.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를 둠.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재량규정
4	안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음(제1항)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등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제3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음(제1항)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재량규정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43조의7 (출국금지)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체납한 상습체불사업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8	안 제43조의8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신설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1항)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6개월 이상인 경우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6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규정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제2항)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제4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제3항)	의무규정
9	안 제10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 미대상 －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선고와 함께 지연이자를 결정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음
2	안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 미대상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4	안 제43조의4(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신설	○	• 추계(제1항)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를 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문 참조
		—	• 미대상(제2항 및 제3항) －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하는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5	안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신설	○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43조의6(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신설	—	• 미대상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지출이 변화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의 감소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7	안 제43조의7 (출국 금지)신설	○	—
8	안 제43조의8 (채불 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신설	—	• 미대상 – 임금채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신설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	11.234	11.330	11.425	11.519	11.614	11.704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신설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개최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관련 위원회를 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본 추계서는 유사 사례를 토대로 산출

－ 2024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가 있으며, 이 중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므로 본 추계서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인적 구성) 유사사례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므로, 장래에 발생할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비)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표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4	8.4	8.4	8.4	8.4	42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안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신설

□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안 제43조의 43)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까지 확대(안 제43조의3)

- 개정안은 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시점에서 구체적 위탁기관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정함
- 이에 업무 위탁 기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안 제43조의2)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안 제43조의3)하며, 이밖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안 제43조의4) 등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함

○ 현재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제43조의2) 및 체불자료 제공(제43조의3) 업무를 자체 행정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5급 1인과 7급 1인이 담당하고 있음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대해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체불사업주 인적사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항(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공개

※ (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채불사업주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채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10년(2014~2023년) 간 명단공개·신용제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10년간 명단공개·신용제재 현황: 2014~2023년

(단위: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명단공개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신용제재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주: 연도별 실시인원

자료 : 고용노동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위탁기관은 기존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이던 업무와 더불어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안 43조의4 신설)과 이와 관련한 임금 등 채불자료의 제공(안 제43조의3) 등을 시행하여야 함
 - 또한 개정안은 상습채불 사업주 요건 및 기존 신용제재 요건 확대 및 현행법에 따른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안 제43조의2) 대상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채불한 사업주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되며,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심의 및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됨
 - 개정안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란, 현행법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함
 1.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채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채불하고,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습채불 사업주 요건 및 기존 신용제재 요건이 확대되는 등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등이 확대되므로, 장래에 발생할 확대 예상건수는 20%, 30%, 50% 증가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

4)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

- 본 추계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1)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필요인원)** 필요인원은 1인당 처리건수와 예상건수를 토대로 산출
 - (1인당 처리건수) 최근 10년 평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건수(774건)를 행정인력 2인이 처리한 것을 참고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387건으로 산출
 - (예상건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최근 10년간 최대값(1,078건)을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예상건수를 현행 대비 20%, 30%,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누어 산출
 - 산출 결과 20% 증가하는 경우와 30% 증가하는 경우 필요인원이 동일하므로, 시나리오 20%(30%) 확대되는 시나리오1과 50% 확대되는 시나리오2로 구성

[표 4] 필요인원 산출: 2026~2030년

(단위: 건)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처리건수(A)	387	387	387	387	387
예상 건수(B)					
- 20% 확대	1,294	1,294	1,294	1,294	1,294
- 30% 확대	1,401	1,401	1,401	1,401	1,401
- 50% 확대	1,617	1,617	1,617	1,617	1,617
필요인원(C=B/A, 명)					
- 20% 확대	4	4	4	4	4
- 30% 확대	4	4	4	4	4
- 50% 확대	5	5	5	5	5

주: 필요인원은 올림으로 산출

- (인건비)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3급 78,228천원, 4급 63,165천원, 5급 44,583천원⁵⁾

[표 5] 인건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필요인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1							
인 건 비	3급(A1)	1명	50	51	53	55	57
	4급(B1)	1명	70	73	76	78	81
	5급(C1)	2명	174	180	187	194	202
	소계(D1=A1+B1+C1)	4명	293	305	316	328	341
시나리오2							
인 건 비	3급(A2)	1명	50	51	53	55	57
	4급(B2)	1명	70	73	76	78	81
	5급(C2)	3명	261	271	281	291	302
	소계(D2=A2+B2+C2)	5명	380	395	410	425	441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효율(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표 6]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시나리오1(A1)	293	305	316	328	341	1,583	317
시나리오2(A2)	380	395	410	425	441	2,051	410
기관부담금							
시나리오1(B1)	33	35	36	38	40	182	36
시나리오2(B2)	43	45	47	49	52	236	47
소계(C=A1+B1)	327	339	352	366	380	1,765	353
소계(C=A2+B2)	423	440	457	474	493	2,288	458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는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589.2만원⁶⁾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PC·사무집기 등 구입비는 2026년 첫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인건비 총액에 3.78%를 적용하여 산출

[표 7]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자산취득비					
시나리오1(A1)	28.1	—	—	—	—
시나리오2(A2)	35.2	—	—	—	—
기본경비					
시나리오(B1)	12.3	12.8	13.3	13.8	14.4
시나리오(B2)	16.0	16.6	17.3	17.9	18.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명단공개·신용제재 건수에 대한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8억 6,000만원~24억 200만원으로 추계

6)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표 8] 업무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인건비(A1)	293	305	316	328	341	1,583	317
기관부담금(B1)	33	35	36	38	40	182	36
자산취득비(C1)	28	—	—	—	—	28	6
기본경비(D1)	12	13	13	14	14	67	13
소계(E1=A1+B1+C1+D1)	367	352	366	380	395	1,860	372
시나리오2							
인건비(A2)	380	395	410	425	441	2,051	410
기관부담금(B2)	43	45	47	49	52	236	47
자산취득비(C2)	35	—	—	—	—	35	7
기본경비(D2)	16	17	17	18	19	86	17
소계(E2=A2+B2+C2+D2)	468	456	474	492	512	2,402	48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출국금지(안 제43조의7)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해제사유를 확인 후 출국금지 연장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여함
 - 이와 유사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9]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국금지 관련 규정 비교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출국금지 업무는 여성가족부 2명, 양육비이행관리원 3명의 인력 추진 중이므로, 본 추계서는 여성가족부의 현황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한편, 2024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5급 1인과 7급 1인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는 현재 담당 인력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용노동부 자체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신규 인력이 채용되어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1)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필요인원) 3인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출국금지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 3명의 인력 추진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출국금지 업무도 3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정안에 규정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⁷⁾이 아닌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근로복지공단 직급별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

○ (인건비)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조사관 수에 각 직급별 단가를 적용하며, 인건비 단가는 2023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직급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산출

- 3급 78,228천원, 4급 63,165천원, 5급 44,583천원⁷⁾
-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표 10] 인건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필요인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인건비	3급(A)	1명	50	51	53	55	57
	4급(B)	1명	70	73	76	78	81
	5급(C)	1명	87	90	94	97	101
	소계(D=A+B+C)	3명	207	214	222	231	240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2)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는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589.2만원⁸⁾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PC·사무집기 등 구입비는 2026년 첫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8)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 기본경비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인건비 총액에 3.78%를 적용하여 산출

[표 11] 출국금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A)	207	214	222	231	240	1,114	223
기관부담금(B)	23	24	26	27	28	128	26
자산취득비(C)	21	—	—	—	—	21	4
기본경비(D)	9	9	9	10	10	47	9
소계(E=A+B+C+D)	260	248	257	267	278	1,310	26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관련 예산 및 채용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